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조합에 대한 의견청취)”를 “(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을 “조합등”으로, “조합을”을 “조합등을”로, “조합에”를 “조합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조합”을 각각 “조합등”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납부유예 관련 서식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대상 사업			
	부과금액		납부 기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등기승낙서

년 월 일 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2. 담보제공 관련 서류	없음

작성방법

- 1.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승낙서’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 2. 신청인은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담보제공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납부담보제공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납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담보대상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원)			
담보제공 사유					
담보의 명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원에 대한 납부담보로
제공합니다.

년 월 일

제공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

귀하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		허가여부		
허가(불허가) 사유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재건축부담금			(원)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

귀하에게 허가한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2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부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재건축부담금			(원)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 라 조사 · 산정한 주택가액에 대 하여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u>조 합</u>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u>조합</u> <u>을</u>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 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또 는 자치구(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u>조합</u> 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 · 2.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택가 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u>조합</u> 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u>조합</u> 으로부터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①----- ----- ----- ----- ----- <u>조</u> <u>합등</u> ----- <u>조합</u> <u>등을</u> ----- ----- ----- ----- ----- ----- ----- <u>조합등</u> 에 -----. 1. · 2. (현행과 같음) ②----- ----- <u>조합</u> <u>등</u> ----- ----- -----. ③----- <u>조합등</u> -----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의견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생략)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납부유예 관련 서식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다.